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02 전반적 문제점
- 03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
- 04 개인정보 보호 분야 문제점
- 06 환경 분야 문제점
- 08 경제민주화 분야 문제점
- 09 결론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관련 법안

- 2016. 3. 24.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원 13인¹ 이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2. 전반적 문제점 :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무한정 규제완화 가능.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 추진 증임

-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규제프리존법은 교육, 의료, 환경, 농업 등 사회공공성이 지켜져야 하는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무한경쟁체제를 만들 우려가 있으며,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규제프리존법 제4조는 명시적인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규제프리존법 제3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완화 규정은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여러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프리존법 제4조(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해당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경우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규제프리존 지정과 관련하여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고(규제프리존법 제6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규제프리존법 제7조). 규제프리존 지정 및 심의 절차에서 규제완화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1 강석훈, 홍지만, 나성린, 김광림, 박명재, 이만우, 김희선, 이정현, 송영근 (이상 새누리당), 장병완, 김관영, 김동철(이상 국민의당), 유승우(무소속) 의원

- 규제프리존 지정의 주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의의결기구인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 등 구성이 비민주적이다.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규제프리존법 제85조 제3항). 즉 규제프리존 지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심의 및 지정을 모두 주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없는 비민주적 구조이다.
-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규제완화 법안임에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 추진 중이다.

3. 보건의료 분야 :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규제완화

-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특례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제43조는, 의료법의 예외규정으로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다.

규제프리존법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규제프리존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국가비상사태 등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도 이미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 된 상황에서 이제 그마저도 풀어주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난립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규제프리존법 제65조 제7항에 명시한 일부 의료기기의 비의료인 사용 허용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 제25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도 불구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프리존 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규제프리존법 제31조는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

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위 조항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지역 단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구축은 국가적 방역시스템을 위한 기본 사항이다.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7%인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개발 명목으로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마저 매각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해주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규제프리존법 제31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전략산업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역내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제40조에 따라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개인 의료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개인 의료정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외국과 같은 경우 해커들의 주된 타겟이 의료정보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4. 개인정보보호 분야 : ‘비식별화’ 라는 모호한 개념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도 어긋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불가피성은 찾을 수 없는 반면,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관련 기업의 이득을 위하여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 디지털 정보 및 정보통신을 통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완화는 일정 지역에서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없다. 규제프리존법에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완화하는 규제는 해당 지역 안에서만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지역 육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 안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등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다만 더 이

상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은 (1) 개인정보인 경우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다만 익명인 경우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다른 개인과 식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그 결과물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이다.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데 규제프리존법은 이 경우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 규제프리존법 제36조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규제프리존법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CCTV)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수집되었고 직접적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대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설치와 운영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 제39조은 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규제프리존법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광범위하고 자동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한바, 규제프리존법 제40

조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이용 제한(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제공 동의(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이용하고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역내사업자’라고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대상이 역내에 그치지 않고 전국, 전 세계에 걸쳐 있으므로, 규제프리존법 제40조는 지역전략산업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국 혹은 전 세계에 걸쳐 무력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한국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판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형편이며,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급증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나, 규제프리존법이 지역전략 산업 육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다.

5. 환경 분야 :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원칙적 규제완화로 환경분야에 큰 피해 우려

- 규제프리존법 제13조 제5조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관련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입증방법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 가습기 살균제의 케이스처럼 기업의 의도에 맞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 또한 규제프리존법 제4조의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의 획일적 허용 역시 환경 규제와 상충된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대표적 규제로 일단 환경사고가 발생되면 그 피해와 복원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원칙(환경정책기본법 제8조)² 원칙에 따라 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일이 사후에 벌어지

2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

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 생명,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그 안정성을 정부가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선별하여 이를 허용행위 열거 방식으로 확정 고시하고, 그렇지 않은 물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 환경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과 검증방법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개정작업을 통해 법적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즉 개별법의 특성과 법적 취지에 맞게 허용 또는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예외적인 허용 역시 법에 명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 제33조 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등,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 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보호지역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로 지가가 낮은 점이 악용돼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 가능한 수요를 보호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부담금의 감면은 보호지역에 대한 대체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재정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간소화법)’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의견청취와 관련, 간소화법 제9조2항 및 시행령7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제프리존법 제67조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에 대해 사업승인신청 13일 만에 이들 계획 등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이 관련 진술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많은 내용에 대해 10일 만에 그 것도 주민이 진술인을 제안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요식행위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득할 수 없다.

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경제민주화 분야 : 대기업,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로 중소기업 생존권 위협

- 규제프리존법 제13조 '기업실증특례' 조항은 개별 기업 단위로 이에 근거하여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무규제지역을 넘어 무규제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즉 특정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부에 직접 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기업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니 규제프리존을 통하여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 제13조(기업실증특례의 신청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중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여 기업실증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이미 박근혜 정권 초기에 반짝했던 '경제민주화' 의지는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과감한 규제폐지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규제프리존법에 반영되어 있다.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서 공정한 경제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릴 민생법안이 통과되어야지, 재벌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철폐 특별법인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결론

-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함
- 규제프리존 지정과 관련하여 심의 절차가 간소하고 지정 및 심의의결의 주체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며 시민의 참여나 공공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반대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의료기기법 무시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함
-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도 어긋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어 반대함
- 환경 분야에서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원칙적 규제완화를 하고 있으며, 입지규제에 대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허용 등 환경 분야에 피해가 우려됨
-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기업이 규제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벌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경제민주화에 더욱 역행할 우려가 커 반대함
- 위와 같은 이유로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 행 일 2016. 5. 3.

발 행 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담 당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